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11 발의연월일: 2022. 9. 29.

발 의 자:인재근·김승남·김민기

소병훈 · 최혜영 · 김상희

이학영 · 김영진 · 권인숙

최종윤 • 이장섭 • 전혜숙

강선우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요양비등 입금 전용계좌 설치와 압류 금지,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행정처분을 받 은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및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 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의료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관리 업무를 시·도에서 담당하므로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 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함(안 제8 조제1항).
- 나. 의료급여증 등 양도·대여 및 부정 사용을 금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 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안 제11조의3제5항 신설).
- 라. 요양비등수급계좌를 통한 입금 및 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 마.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의 압류를 금지함(안 제18조 제2항 신설).
- 바.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과 보조기기 판매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규정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사. 급여비용 거짓 청구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도입함(안 제29조의3).
- 아.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함(안 제 32조 및 제32조의2).

자.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추가함(안 제32조의3제1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급권자에게"를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사용"을 "신청·발급 및 사용"으로 한다.

제11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 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 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 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제23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게 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방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제2항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 그 밖에 다른 의료급여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 2.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공표심의위원회는 공표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및 내용을 알려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급여비용"을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

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군수	제8조(의료급여증) ①
·구청장은 <u>수급권자에게</u> 의료	<u>수급권자가 신청하는</u>
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u>경우</u>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
	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
	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
	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underline{4}$ 제 1 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u>⑥</u>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u>사용</u> 등에 필요한 사항은	- <u>신청·발급 및 사용</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 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 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 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 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 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 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 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 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생 략)

<신 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 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 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 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 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

- 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 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 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 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사람(제8조제5항을 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 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 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 를 판매한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 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 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 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 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 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④ (생 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 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 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 의료급여를 받 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 | 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 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 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 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 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 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 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이 의료급여를 받게 한 수급권 자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 ⑥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독촉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 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 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 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 (8) -----제6항-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 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 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① 제9항----납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 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 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으로 청구하여 제28조 또는 제 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2항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의료급여기관 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의료급여기관과 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 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2.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 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u>보건복</u> 제3 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 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 ·도 및 시·군·구를 지도· 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 게 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
 문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 ③ 공표심의위원회는 공표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및 내용을 알려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한다.
- ④ 그 밖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u>보건</u> -	루
<u>지부장관, 시·도지사는</u>	_
	_
	_
	_
	_

- ② (현행과 같음)
- ③ <u>보건복지부장관</u>, 시·도지사 ------

④·⑤ (생 략)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① <u>시장</u>
<u>•군수·구청장</u>, 급여비용심사
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
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 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 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① <u>시·</u>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
<u>.</u>
②・③ (현행과 같음)